

2000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(안)

심 사 보 고

1999. 12. 15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1999년 11월 24일

○ 회부일자 : 1999년 11월 24일

다. 상정일자 :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

○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(1999. 12. 15)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
보고, 심의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직무대리 곽연창)

가. 제안이유

○ 지방재정법 제7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
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

-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중소·벤처기업 임대공단 조성부지 매입
- 도민 종합레포츠타운 조성부지 매입,
- 청주서부소방서 신설 부지매입 및 청사신축 계획 등
- 2000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사유가 발생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나. 주요 골자

-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중소·벤처기업임대공단 조성부지 매입
 - 위 치 : 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 내
 - 규 모 : 부지 99,174m²(공장용지)
 - 사업기간 : 2000년 - 2001년
 - 사 업 비 : 12,810,000천원 (5년간 분할 매입)
 - 회계구분 :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
- 도민 종합레포츠타운 조성부지 매입
 - 위 치 :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일대(구 종축장 주변)
 - 규 모 : 부지 403,306m²(전, 답, 임야 등)
 - 사업기간 : 2000년 - 2004년
 - 사 업 비 : 160억원 (부지 매입비)
 - 회계구분 :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

- 청주 서부소방서 부지매입 및 청사 신축
 - 위 치 : 청주시 흥덕구 가경3 택지개발지구 내
 - 규 모 : 부지(대지) 6,610.20m² 청사신축 3,316m²
 - 사업기간 : 2000년 - 2001년
 - 사 업 비 : 5,453,596천원 (부지 2,754.372, 청사 2,699,224)

3. 검토보고 요지

(기획행정전문위원 : 김 종 만)

2000년도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(안)을 검토한바,

이는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과 소방서 청사를 신축하려는 계획으로

-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중소·벤처기업 임대공단 조성부지 매입에 대하여는
 - 오창과학산업단지내 공장용지를 분양중에 있으나 입지여건, 분양단가 등에서 인근 공단과 비교하여 흡족한 메이트가 없어 분양율(35.9%)이 저조하므로
 - 단지내 공장용지를 매입, 임대로 전환하여 기업체의 용지확보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서
 - 성장 가능성 있는 유망 중소·벤처기업을 조기에 유치하여 오창과학산업단지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.

○ 사업계획은

- 2000년도에 충청북도개발사업소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공장 용지 3만여평(99,174m²)을 매입하고, 부지 매입비 128억원은 5년간 균등 분할 조건으로 2000년도 소요예산액은 26억원임.
- 공장 부지는 1업체당 1,000평 기준으로 30개 업체를 유치, 2001년까지 공장을 건립토록 추진하고
- 임대 조건은 벤처기업의 경우 임대기간 20년에 연간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10/100으로 연간 임대수입은 1억 4천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나

- 임대공단 입주희망 업체 예비조사, 인근공단 및 분양용지와의 비교평가 등 기업체 유치 전략의 세부적이고,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겠다고 사료됨.

□ 도민 종합레포트타운 조성부지 매입은

-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구 종축장 부지에 도민 종합레포트타운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조성을 하기 위하여
-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부지 매입비 160억원(평당 13,000원정도)을 투자, 구 종축장 인근토지 122천여평을 구입하고자 하는 계획으로
- 토지 구입의 필요성과 레포트타운의 시설 및 성과도 등 세부적이고, 종합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됨.

□ 청주 서부소방서 부지매입 및 청사 신축은

- 청주 서부지역과 청원군 지역의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하여 고층 아파트 단지 및 대규모 상가 형성으로 도시가 확대되고, 오송의료보건단지,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인구 증가는 물론 각종 재난사고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어
- 청주시 흥덕구 가경 3지구내 부지 2,000여평을 구입, 1,000여평 규모의 소방청사를 신축하고, 청주소방서를 신설하려는 것으로
- 소요예산은 총 54억 5,360만원으로써, 부지매입 27억 5,437만원과 청사 신축비 26억 9,923만원이 소요되며 소요예산은 2000년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2001년 까지 년차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
- 신설하려는 청주 서부소방서의 직제와 정원 확보 계획, 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(안)

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(안)

의안 번호	21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'99. 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충청북도개발사업소의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중소·벤처기업 임대조성 공단부지 매입, 도민 종합레포츠타운 조성부지 매입, 충청북도소방본부의 청주가경(3)택지개발지구 내 청주서부소방서 부지 매입 및 청사신축에 따른 2000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재산의 취득

<오창과학산업단지내 중소·벤처기업임대공단 조성부지 매입>

- 위 치 : 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내
- 규 모 : 부지(공장용지) 99,174m²
- 사업기간 : 2000년 - 2001년 까지
- 사 업 비 : 12,810,000천원(5년간 분할매입)
- 회계구분 :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

<도민종합레포츠타운 조성부지 매입>

- 위 치 :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일대(구 종축장 주변)
- 규 모 : 부지(전, 답, 임야 등) 403,306㎡
- 사업기간 : 2000년 - 2004년 까지
- 사 업 비 : 160억원(부지매입비)
- 회계구분 :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

<청주서부소방서 부지매입 및 청사신축>

- 위 치 : 청주시 흥덕구 가경(3)택지개발지구내
- 규 모 : 부지(대) 6610.20㎡ 청사 3,316㎡
- 사업기간 : 2000년 - 2001년 까지
- 사 업 비 : 5,453,596천원(부지 2,754,372, 청사 2,699,224)

3.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: 「별 첨」

4. 관계법령 : 「별 첨」

-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
-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9조

공유재산관리계획서

2000년도 관리계획 총괄표(7-1)

[회계명 : 일반회계, 특별회계]

(단위 : m², 천원)

구 분		상 반 기			하 반 기			합 계		
	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
취득	계	토지			3	509,090	31,564,372	3	509,090	31,564,372
		건물			1	3,316	2,699,224	1	3,316	2,699,224
		기타								
	매입	토지			3	509,090	31,564,372	3	509,090	31,564,372
		건물			1	3,316	2,699,224	1	3,316	2,699,224
		기타								
	교환	토지								
		건물								
		기타								
기타	토지									
	건물									
	기타									
처분	계	토지								
		건물								
		기타								
	매입	토지								
		건물								
		기타								
	교환	토지								
		건물								
		기타								
	기타	토지								
		건물								
		기타								
사용 및 대부허가	토지									
	건물									
	기타									

2000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(7-2)

[회계명 : 일반회계, 특별회계]

(단위 : m²,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추정가액	취 득 시 기	취 득 사 유	재산취득 소 유 자 주소,성명	비 고
	지목	소 재 지	수 량					
계	토지		509,000	31,564,372				
	건물		3,316	2,699,224				
1	토지	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내	99,174	12,810,000	하반기	중소·벤처기업임대 공단 조성부지 매입	충청북도	충청북도 개발사업소
2	토지	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(구 종축장 주변)	403,306	16,000,000	"	도민종합 레포츠 타운 조성부지 매입	"	"
3	토지	청주시 흥덕구 가경(3) 택지개발사업지구내	6,610	2,754,372	"	청주서부소방서 부지 매입	"	충청북도 소방본부
	건물	"	3,316	2,699,224	"	청주서부소방서 청사 신축	"	"

관 계 법 령 발 취

[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]

지 방 재 정 법	지 방 재 정 법 시 행 령
<p>제77조(공유재산의관리계획)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<p>제84조(공유재산의관리계획)①법 제77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.</p> <p>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으로 한다. 이 경우 토지에 있어서는 제2호에 규정된 면적 이하 일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).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를 건물 및 기타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 2. 토지에 있어서는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3천제곱미터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)

[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]

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	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
<p>제3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①법 제77조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도지사가 익년도 예산편성전 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을 하여야 한다.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 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.</p>	<p>제29조(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)①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공유재산관리계획서(별지 13호서식)2 ~ 5호 생략